

CPR

고문·가혹행위

고문피해관련 청원(고소, 항고) 등

고문피해관련 청원(고소, 항고) 등

청원 소개 의견서

청원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성명: 대표단 5인(박정기, 인재근, 최의팔, 서준식, 최민화)의 1, 214인 83
건명	'고문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등 고문 피해 대책 촉구 청원
소개년월일	1993년 12월 29일
<p>소개의견</p> <p>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저질러진 고문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과 더불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고문 피해 대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문 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개의원

민재정



서명자 통계

변호사	30인
의사	13인
교수	1인
재야인사	30인
강사	55인
기독교	268인
천주교	24인
불교	15인
여성단체	90인
일반인(연대를 제외한 학생 포함)	541인
연세대 학생	216인
기타	3인
합계	1,284인

~~1,283~~ 1,284

청 원 서

수신: 국회의장

청원인: 박정기, 인재근, 최의팔, 서준식,
최민화외 1214인/(별첨 '청원인
서명부'에 등재)

연락처: 796-8364, 5

제목: '고문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등

첨부: 1. 청원인 서명부 3부
2. 국회의원 소개서 3부

'고문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등 고문 피해 대책 촉구 청원 소개의원 서명 날인부

1. 대책 촉구 청원의 취지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수많은 고문 사건들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고문은 가장 잔악한 인권유린 범죄이며, 국제적으로도 고문이 발생하는 어느 국가도 문명 국가로 대우 받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고문에 대한 전 인류의 공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고문은 상당히 사라졌고, 앞으로도 개선되리라 생각하지만, 지난 시절에 고문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질환을 얻고 더욱이 현재까지도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고문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고문 피해는 단지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이 수립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문과 고문 피해자의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2. 청원의 내용

- 1) 고문 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자료>

1. 고문 대책 촉구 청원 서명부(1권, 서명인수: 1,218명):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의원명	날인	소속정당	소속위원회	선거구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2호

지정수신인 : 인권운동사랑방

수발신 : FAX/8227968366(인권운동사랑방)
 수신 : !KR/DACOMHS/CHOLLIAN//GYUSUN
 송신 시각 : 94/11/18 16:24
 수신 시각 : 94/11/18 16:27
 메시지 ID : 0000016656
 제목 : 고문사건 재항고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서.
	B11	67

송신자 : GYUSUN (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3-2686 팩스 745-5604

1994. 11. 18

1. 11. 18. 유신과 5공 군사독재정권 당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불법언행되어 가혹행위등 고문을 당한 합주명씨등 장기수 11명이 대검에 자신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 등을 처벌해달라고 재항고장을 냈습니다. 지난 7. 7. 66명의 장기수.양심수가 집단 고소고발장을 냈고 이중 합주명씨등 장기수 11명의 사건에 대해 7.말경에서 8.초경 정기용 검사등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불기소처분을 하자 9월경 합주명씨등 11명이 항고를 제기했고 10월경 기각처분이 나자 오늘 11. 18. 재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 재항고의 취지

1) 공소시효제도의 근본취지는 범칙자를 신속하게 걸거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를 처벌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소시효제도는 애초의 취지를 간과한 채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2)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님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시효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 특히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제도를 철폐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현실에 비쳐볼 때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제인권규약',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 국제법은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3) 이미 국내에서도,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할 경우 해외에 있는 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해외도피자 시효정지제도'를 검찰이 정기국회에 제출했으며, 또한 검찰은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부실시공에 대한 공소시효 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소시효제도가 천부의 제도도 절대적인 체제도 아님은 검찰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고문수사관 고소사건을 기각한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처벌하기 보다는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는 지적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권침해 범죄행위 처벌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4)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 고문, 불법체포, 감금 등 인권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인도적 인권범죄행위는 그 진상이 밝혀지기 보다 국가권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은폐되었고 범죄자들은 과오에 대한 뇌우침은 커녕 승진과 포상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건 재항고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비인도적인 인권범죄의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여 다시금 불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5)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의 대열로 나아가고 있고 국제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선진국으로의 발돋움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정착과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에 합치하는 법제도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정부는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 협약)을 국무회의에 의결하였으며 가입동의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확고한 인권의 보장과 인권존중국으로서 이미지를 고양하며 인권문제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을 '고문방지 협약' 가입 취지로 밝히고 있는 지금, 가장 비인도적이며 잔인한 범죄행위인 이번 고문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바로 문민정부의 인권보호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재항고사건에 대한 공정한 조사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검찰상을 정립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이행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재항고 제기자

1> 함주명(월남자사건, 1983.2.18 치안본부 남영동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6일간 불법구금, 이근안 전 경감 등 수사관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등 고문당함. 무기수로 12년째 전주교도소에 복역중)

2> 황대권(구미유학생사건, 1985.6.4.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63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안기부 수사관에게 물고문, 통닭구이, 비너꽃기 등 고문당함. 20년형으로 10년째 안동교도소에 복역중)

3> 정 영(납북어부사건, 1983.9.13.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0일간 불법구금, 김성수등 안기부 수사관에게 발가벗겨 곤봉구타, 잠안재우기 고문당함. 12년째 대구교도소에 복역중)

4> 석달운(행불자가족사건, 1980.8.21 중앙정보부(현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7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중앙정보부 수사관에게 물고문, 성기고문 등 고문당함. 15년째 복역중)

5> 박근홍(행불자가족사건, 1981.3.7. 안기부에 불법연행, 이상은 등 안기부 수사관에게 물고문, 성기고문 등을 당함. 영장없이 63일간 불법구금. 3년6개월 복역하고 석방)

6> 박동운(행불자가족사건, 1981.3.7.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63일간 불법구금, 이상은 등 안기부 수사관에게 물고문, 성기고문 등 고문당함. 대구교도소에서 14년째 복역중)

7> 양동화(구미유학생 사건, 1985.6.2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65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안기부 수사관에게 잠안재우기, 몽둥이로 전신구타, 기합, 협박 등 고문당함. 대구교도소에서 10년째 복역중)

8> 강용주(구미유학생 사건, 1985.7.1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35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안기부 수사관에게 성기고문, 잠안재우기, 발가벗긴 채 몽둥이로 전신구타 등 고문당함. 안동교도소에서 10년째 복역중)

9> 김태룡(월남자가족사건, 1979.6.15 치안본부 남영동본실 및 춘천경찰청 대공본실에 불법연행, 성명불상 수사관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당함. 36일간 불법구금. 16년째 대전교도소에 복역중)

10> 이상철(납북어부 사건, 1983.11.15 보안사 경남본실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3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보안사 수사관에게 전기고문, 성기고문, 고추가루 물고문, 겨자물고문, 천장에 매달린 채 집중구타, 잠안재우기, 밭굼기 등 고문당함. 광주교도소에서 12년째 복역중)

11> 김양기(일본관련 사건, 1986.2.21 보안사 광주본실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4일간 불법구금, 강병환 등 보안사 수사관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잠안재우기, 전신구타 등 고문당함. 7년간 복역하고 석방)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0.1	4

4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국회청원취지서>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 복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중에 몇몇 사건은 이미 법의 심판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난 시기의 고문의 실상과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는 당시의 고문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이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국진동지가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후유증을 자신과 가족의 몫으로만 여겨 왔고, 사회와 정부에서 방치해왔음을 알았고, 이에 우리는 문국진 동지의 쾌유와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고문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10월 13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2. 다시 거론할 것도 없이 인류문명의 최악이며, 가장 추악한 적이라고까지 이미 국제사회에서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이런 고문방지의 정신이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다는 것도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유보조건없이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추악한 고문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최근의 김삼석 남매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도 공권력에 의한 고문은 남아 있으며, 문국진 동지와 같이 고문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다수라는 사실 앞에서는 정부의 고문 근절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고문의 근절을 위해서는 과거 정권하에서 고문으로 피의자의 자백을 강요하였던 책임자들을 명확히 가려 처벌하는 일과 아울러 고문을 일삼았던 기관의 민주적인 개폐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지난 시기에 고문을 당했던 이들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만약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들에 대한 치료대책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고문 문제는 단지 그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며, 그 가족이 당하는 고통도 매우 크다는 사실에서 이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국회가 먼저 나서서 지난 시기에 저질러진 고문에 대한 조사사업을 전개하고, 그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고문및 고문후유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구제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시기의 고문문제라고 해서 단지 덮어만 둘 것이 아니라 지난 시기의 고문 문제를 엄격히 다룸으로서 다시는 이땅에서 고문이 발생하지 않고, 고문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전화: 796-8364~5 팩스: 796-8366

참여연대 인권 자료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10.1	17.

청 원 이 유

1. 제 14조 1. 각 당사국은 고문행위의 피해자가 구제조치를 받으며, 가능한 한 충분한 원상회복의 수단을 포함한 정당하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자국의 법체계 내에서 보장한다. 고문행위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부양가족이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1984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87년 6월 26일자로 발효된 유엔의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협약'(약칭 고문방지협약) 중에서>

우리는 지난 5,6공의 수많은 고문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 사건 중에 극히 일부는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시기의 고문의 실상에 대한 조사와 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심지어는 고문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문국진씨는 지난 86년 소위 '보임·다산 사건'에 연루되어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 그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지난 81년 인천 대헌공전 재학중이었던 최영미씨는 안기부 인천분실에서 고문을 당하고 지금껏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지난 90년에는 '인천 부천 노동자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최동씨가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다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시기에 자행된 고문은 단지 시국사건에 한정되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범에 대해서도 잔인한 고문을 가하는 등 그 정도는 매우 광범위하였습니다.

이들 고문사건과 고문 피해자에 대해서 아직껏 이 사회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 피해자와 가족의 몫으로만 남겨두고 있는 형편입니다.

고문은 국가적인 범죄이고, 그런 범죄중에서도 가장 잔악한 인간파괴적인 범죄라는 사실은 이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따라서, 고문사건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고 고문이 근절되고 고문 피해자들이 회복되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고문 피해자와 가족이 당하는 고통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그 고통이 덜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원을 하는 바입니다.

2.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회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1) 고문 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1993년 12월 일

청원인 대표 박정기, 인재근, 최의팔, 서준식, 최민화의 1,214인

34

데 이 콤
천 리 안

F A X 서 비 스

지정수신인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 자료실		
등록일	투기호	자료번호
	B9	86

수신 : FAX/8227968366(인권운동사랑방)
 발신 : !KR/DACOMMS/CHOLLIAN//GYUSUN
 송신 시간 : 95/01/09 08:41
 수신 시간 : 95/01/09 08:43
 메시지 ID : 0000030346
 제목 : 고문 불기소 헌법소원

송신자 : GYUSUN (남규선)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3-2006 팩스 745-5604

1995. 1. 9.

수신 : 각 언론사
 제목 :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고문범죄에 공소시효 적용은 위헌 주장

민주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95.1.9. 함주명씨(66세) 등 장기수 6명은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2. 함주명씨 등 장기수 6명이 헌법소원 청구에 이르게 된 과정

지난 94. 7. 7. 군사독재정권 당시 안기부 등에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장기 간혹독한 고문을 당했던 함주명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을 서울지검에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서울지검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고, 10월 하순 경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였고, 12월 대검은 이들 장기수 11명 중 6명에 대해 재항고기각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함주명씨 등 장기수 6명은 대검에서 재항고마저 기각 처분이 내려지자 95.1.9 오늘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헌법소원 청구이유

검찰이 함주명씨 등의 고문수사관 고소전에 대해 불기소 처분(공소권 없음)을 내린 것은 형사소송법 제 249조 제 3조(공소계기기간)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체포 감금)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7년이 지나 불법체포 감금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법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권리를 천부적 불가침 무제한의 권리로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2조 제 1항(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제 2항(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제 3항(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범죄사건의 가해자의 처벌과 소추권의 행사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 11조 제 1항(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헌법 제 27조 제 5항(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 30조(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신체의 자유권,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인신구속에 있어서 영장에 의한 다라는 헌법상의 보장과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될 수 없으며 고문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은 곧바로 헌법상의 고문금지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제도는 고문범죄자를 더이상 소추할 수 없도록 하여 고문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평등권,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 범죄피해자의 구조받을 권리의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상의 헌법 규정에 의거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한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한편 공소시효가 결코 천부의 제도나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은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이미 공소시효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프랑스,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 특별입법이나 특별조치를 제정하여 공소시효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990년 우리 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 7조, '전쟁 및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on 1968), 유럽협약(European Human Rights Agreement) 제 3조, 미주인권협약(American Human Rights Convention) 제 5조 등 국제법은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 헌법소원 청구 취지

오늘 합주명씨 등 장기수 6명은 '검찰의 고문범죄 불기소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고문범죄 뿐 아니라 12.12 군사반란, 5.18 광주학살 등 과거 군사독재에 의한 학살, 불법체포, 감금 등 인권침해 범죄가 공소시효제에 가로막혀 그 가해자를 방면하고 있는 현대사를 바로잡고 이땅에 영원히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추방되는 시급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5.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합주명씨 등 장기수들은 과거 유신과 5공 군사독재 정권 당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장기간 혹독한 고문을 당한 인권침해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안기부, 치안본부 등 대공수사기관에서 고문에 의해 허위작성된 조서로 중형을 선고받고 1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감옥에 수감중입니다.

6. 헌법소원 청구의 대리인은 박원순, 이종걸, 유선영, 김형태, 백승헌, 김한주, 김갑배, 김진국, 박세경, 오세훈, 김계완, 박성호 변호사 등 12명입니다.

7. 지난 94. 7. 7.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을 서울지검에 고소하였던 황대권, 박동운, 이상철, 김양기, 양동화씨 등 장기수 5명은 지난해 12월 재항고하여 아직 대검에 계류중입니다. 이후 황대권씨 등 장기수 5명의 재항고전에 대한 대검의 처분결과에 따라 2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8. 혹독한 고문으로 인해 후유증을 지닌 채 장기구금되어 있는 합주명씨 등 청구인들이 마지막 국내법에 호소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바로 오늘, 한국 정부는 '고문 및 그밖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합니다(이 협약의 핵심조항인 개인청구권 등을 유보한 가입으로 정부의 고문종식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은 고문종식을 전세계에 선언하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으로 고문종식의 의지가 있다면 고문방지협약의 가입 이전에 공소시효를 빌미로 고문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고문범죄를 기소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 협약 가입은 정부의 이미지 고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정부의 고문종식 의지는 본 헌법소원 결과를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9. 우리는 이 건 헌법소원이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의 공소시효 부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시급성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1995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함주명씨(66세) 등 헌법소원 청구인 6명의 가족들과 헌법소원 대리인인 유선영, 김제완 변호사 등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합니다.

1차 헌법소원 청구자 6명 소개

1> 함주명(66세,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

월남자가족사건-개성출신이던 함주명씨는 6.25때 월남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대남공작원을 자원, 54년 4월 14일 군사분계선을 넘자마자 자수, 석방되어 남한에 정착. 1968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요시찰대상 해제 통보까지 받았으나 월남한 연행. 영장없이 46일간 불법구금되어 이근안 외 수사관 4명에게 전기고문, 물고문, 10일간 잠안재우기, 빨래방망이로 전신구타, 볼펜으로 발바닥 찌르기, 굶기 등 의 고문당함. 83년 4월 4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발부, 무기형 선고받음.

2> 정영(55세, 현재 대구교도소 수감중)

납북어부사건-1965년 10월 29일 주민 100여명과 함께 조개잡이를 갔다가 북한 경비선에 의해 강제납북되었다. 22일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여 강화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석방. 28년이 지난 후 1983.9.13. 영장없이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0일간 불법구금. 김성수와 안기부 수사관 2명에게 발가벗겨 40일 동안 매일 곤봉구타당하여 3-4일간 귀가 들리지 않았음, 10일간 잠안재우기 고문당함. 83.10.22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발부, 무기형 선고받음.

3> 석달윤(65세, 현재 전주교도소 수감중)

행불자가족사건-6.25때 행방불명된 고종사촌형에게 포섭되어 이적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일가족 5명이 구속됨(고종사촌형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1980.8.21 영장없이 중앙정보부(현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47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중앙정보부 수사관 6명에게 물고문, 볼펜으로 성기 찌르기, 송곳으로 허벅지 찌르기, 20일간 잠안재우기, 몽둥이로 전신구타 등의 고문당함. 80.10.6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발부, 무기형 선고받음.

4> 박근홍(49세, 3년 6개월 수감후 출소함)

행불자가족사건-6.25때 행방불명된 아버지에게 포섭되어 이적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일가족 5명이 구속.(6.25후 아버지 생존여부를 알 수 없다)

1981.3.7. 영장없이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63일간 불법구금. 이상은 외 안기부 수사관 4명에게 성냥불로 성기태우기, 막대기로 성기구타, 물고문, 10일간 잠안재우기, 몽둥이로 전신구타 등의 고문당함. 1981.5.8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발부, 3년 6개월 복역하고 석방.

5> 강용주(34세, 현재 안동교도소 수감중)

구미유학생 사건-미국 유학생이었던 고교 선배와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1985.7.1 영장없이 안기부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35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안기부 수사관 7-8명에게 성기를 책상위에 올린 후 몽둥이로 구타당함, 7일간 잠안재우기, 발가벗긴 채 몽둥이로 전신구타 등 고문당함. 1985.8.5 국가보안법으로 영장발부, 무기형 선고받고 1993년 20년으로 감형됨.

6> 김태룡(43세, 현재 대전교도소 수감중)

월남자가족사건-1965년 7월 경 남하한 친척에게 포섭되어 이적행위를 해왔다는 혐의로 일가족 12명이 구속.(친척을 숨겨준 사실은 인정하나 이적행위 부인)

1979.6.15 영장없이 치안본부 남영동본실 및 춘천경찰청 대공본실에 불법연행. 영장없이 36일간 불법구금. 성명불상 수사관 10명에게 20일간 전기고문, 물고문 당하여 하루에도 3-4차례 기절함. 몽둥이로 전신구타, 7일간 잠안재우기, 발가벗긴 후 성희롱 등의 고문당함. 1979년 7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영장발부, 무기형을 선고받음.

2부

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 Human Rights Group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단번호
	B11	63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763-2606 팩스745-5604

제목 : 양심수 66명, 고문수사관 집권 고소, 고발

1994. 7. 7

이 땅의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기지단체 경의를 포함합니다.

과거 시국사건 관련으로 인거부 등 수사기관에 연방돼 고문을 당한 양심수들이 자신을 고문한 수사관을 7월 7일 집단고소,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심수 66명으로 이중 48명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오늘 66명의 고소인은 시윤지건을 방문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오늘 고소장을 낸 66명중 함주명씨를 비롯한 장기수 20명은 육신과 5공군사특재 정권 당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장기간 옥박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안기부, 보안사 등 대공수사기관에서 고문에 의해 하위로 작성된 조서도 증형을 신고받았습니다.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에게 권기고문, 불고문을 당한 이들은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려 고문당했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기관 뿐 아니라 검찰과 법원까지 한세해 검법치도 받은 위울한 현실에 좌절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심의에 빠져있다가 오늘 어렵게 고문 수사관을 고소, 고발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형사소송법 상으로는 폭행, 가혹행위 등 고문범죄에 대해 중상해의 경우일지라도 공소시효가 7년으로 못박아놓고 있기에 6공 이전에 발생한 고문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 공소시효제도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을 불거뜨리는 데 목적없고 공소시효를 놓으시 신속하게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비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고 대다수의 국가들은 공소시효제도를 두지 않고 있고 특히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문수사관 집권 고소, 고발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1. 인권침해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시금 유행한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입니다.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국가권력에 의해 자행되었던 고문 등 인권유린은 그 진상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행했던 과거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는 것만이 다시는 권력형 인권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2. 고문등 비인도적 범죄행위가 다시금 자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제도를 개선하여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국가에 의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하루빨리 구제해야 합니다. 고문에 의해 조작되어 장기구금중인 양심수들의 사건을 재조사하고 이들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하에서 독재에 항거하던 많은 시민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과거 군사독재가 체계적으로 자행한 고문 범죄 행위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침해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1986.10 경 반제동맹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문실에 연행돼 이근안 등에게 고문당한 박충렬씨 등 12명이 89년 1월 서울지법에 고문수사관을 고소했으나 고소장 접수후 5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여지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과거 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 보다는 은폐하는데 골몰해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지른 것입니다.

최근 1989년 공안정국 하에서 안기부에 연행돼 고문을 당했다고 안기부 수사관을 고소한 홍성남, 방양근, 차일환 등에 대해 검찰이 잇달아 불기소처분을 한 것을 볼때 오늘 문민정부에서의 검찰이 과연 과거와 어떤 차별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양실수 66명의 고소, 고발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고 공명정대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인권범죄를 뿌리뽑아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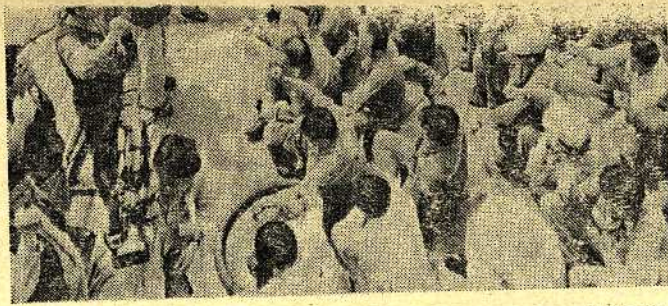
오늘 7월 7일 박충렬씨 등 3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상 제출자 명단 66명>

1. 장기수 - 양동화, 정영, 박동운, 김정득, 김장호, 박수관, 김태봉, 유정식, 황태권, 강용주, 이현치, 이상철, 석달용, 한주명, 장의관, 박근홍, 박경준, 김양기, 김성만, 김현(20명)
2. 전대학 관련 - 송갑석, 한철수, 조형근, 태제준, 손성교, 송규봉, 정성준, 최만식(8)
3. 사노맹 사건 관련 - 박기병, 백대웅, 황철년, 남진현, 김진주, 차익종, 은수미, 권종길, 박동순, 박현철, 이원혜, 이은경, 전경희, 정주용, 강제운, 장민성(16)
4.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 손병선, 이경섭, 조덕원, 박미옥, 신선아, 최진선, 황정희, 손민영, 임종호, 김상득, 송철호, 유신성, 한경인, 조일준, 송혜숙, 윤재형, 임병규, 임인출, 이승나, 신동욱(20)
5. 국민대생 생매장 고문 사건 - 김정원
6. 자민통 사건 - 장기수

파업을 벌인 뒤...
 노조에 일임했다.
 한진중공업 노조는 이날 회사
 정문을 봉쇄하고 공장 안 곳곳에
 장애물을 설치한 데 이어 농성중
 인 문반선 위에 비상식량과 취사
 도구를 비축하는 등 장기농성에
 대비했다.
 경찰은 30개 중대 2천5백여명을
 동원해 농성노동자들을 해산할 계
 획이나 문반선의 높이가 40여m에
 이르고 감판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철제계단이 좁아 사고가
 날 위험성이 커 쉽게 해산에 나서
 지 못하고 있다.

△출근 거부 △대화 재개 등의 방
 침을 밝혔다.
 경북경찰청도 이날 오전 5시 경
 찰 16개 중대 2천여명을 경북 달
 성군 대우기전에 진입시켜 농성노
 동자들을 강제해산하고 이문용(34)
 씨 등 노동자 38명을 연행했다.
 한편 전날 밤 경찰의 강제해산
 과 함께 연행된 부산 메리놀병원
 노조원 70여명은 29일 오전 풀려
 난 뒤 다시 병원에 들어가 병원정
 문을 봉쇄한 채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이수윤 척익립 홍용덕 이수범 기자



선상 결의 경찰 진입에 대비해 12만8천급 액화천연
 가스 운반선 위로 올라간 한진중공업 노조원
 1천3백여명이 29일 오전 선상에서 조합원총회를 갖고 강력한 투
 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부산/임완호 기자 전송

안전이 크게 위협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중단된
 단체교섭을 30일 오전 10시 마포
 민주당사에서 갖자"고 제의했다.
 이에 앞서 노조쪽은 이날 오후
 3시 민주당사에서 교섭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공시쪽은 "중양노동위
 의 직권중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
 서 별도의 노사간 협상의 필요성
 을 느끼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한편 서울시지하철공사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전체 노조원 8천7

대전교도소 재소자 위임장 거부

시국관련 수감자 고소장 접수 막아...헌법권리 침해

대전교도소(소장 김희락)가 수
 감중인 시국사건 관련 재소자들의
 고소장 접수를 위해 가족들이 신
 청한 위임장 작성을 거부해 물의
 를 빚고 있다.
 29일 민가협과 재소자 가족들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송
 감석(28·전 전대협 의장)씨가 안
 기부 수사관을 가혹행위 등의 혐

의로 고소하기 위해 송씨의 어머
 니 정양업(58)씨가 지난 27일 오
 후 교도소로 위임장을 받으러 갔
 으나 작성을 거부당했다.
 정씨는 "아들을 대신해 고소장
 을 제출하기 위해 위임장을 만들
 어 교도소 담당직원에게 제출했으
 나 교도소쪽은 '안기부를 상대로
 하는 고소를 어떻게 해주느냐'며

위임장 작성을 거부했다"고 말했
 다.
 복역중인 재소자가 고소·고발
 등의 법률활동을 하려면 위임인을
 선정해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도소는 재소자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재소자의 무인을 받고
 담당교도관이 이를 증명하는 서명
 을 해서 위임장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대전교도소쪽은 이날 송씨 이외
 에도 김태룡(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복역중)씨의 누나 김순자씨, 조덕
 원(-)씨의 부인 구미영씨가 각각
 안기부 수사관을 고소하기 위해
 낸 위임장도 작성을 거부했다.
 민가협은 고문 등의 불법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당한 시국사건 관련자 65
 명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집단
 고소를 준비해 왔다.
 민가협에 따르면 전주·부산·청
 주·원주·대구·목포·군산교도소 등
 에서는 재소자 가족들이 지난 27·
 28일 이들 동안 모두 위임장을 받
 았으나 대전교도소만이 이를 거부
 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안
 상운 변호사는 "재소자가 법률행
 위에 대한 위임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교도소 당국이 이를 가
 로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리면서 "이는 헌법상 보장된 권
 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지적
 했다.

백기철 기자

"경찰개혁 촉구" 황호항씨 공정인사

경쟁
 동료
 고
 지
 "우
 진
 야
 이
 러
 경
 사
 일
 그
 여
 성
 8
 투

인전/김영환 기자

말의 학생운동 경력 때문에 한
 때 시표를 강요당했던 한 경무관
 이 퇴임식에서 '문민정부하의 경
 찰 지휘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경찰개혁을 촉구해 경찰 내부에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35년간 정들었던 제복을 벗고
 경찰 조직을 떠나는 해양경찰청
 경무부장 황호항(58) 경무관은 2
 9일 오전 해경 강당에서 열린 퇴
 임식에서 "가족이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에서 소
 외받고 문민정부에서조차 냉대받
 는 불운한 사람이 더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 경무관은 이어 "비민주적인
 인사관행이나 행정처리는 빛나건

사 검살에 상추는 암에 걸릴 확률
 이 높다고 한다. 이는 돼지와 상
 추의 기가 모두 차기 때문인데 삼겹
 살을 상추에 싸먹으면서도 암에 걸리
 지 않으려면? 본문 50P. **권영석**

다습건강교실에는 건강복지
 내용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신국문, 4,5쪽, 10,000원)
 해감을 받으신 후 전화주시면
 동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 조목은행 369-06-193423
 한디슈 * 우체국 012914-
 0053829 - 12 한디슈
 전화 (02)553-4488

남북한을 이겨내자
 남북한을 이겨내자
 남북한을 이겨내자

우리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의 글을 읽으며 그들이 전쟁을 원
 해하지 의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안도